

제 호

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

설치자	성명		생년월일	
			성별	
	주소			
예방시설	명칭			
	소재지			
	설치 목적			
	운영 방법		병실 수	
	수용 능력		총 수용 인원	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 설치를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